|  |  |
| --- | --- |
| **SPSPSPSP****SPSPSPS****SPSPSP****SPSPS****SPSP****SPS****S** | SPS-부문기호-고유번호-일련번호 |
|  |
|

|  |
| --- |
|  **←인증표준인 경우 도표삽입 단체표준명** |

SPS-부문기호-**고유번호-일련번호:**20XX**(20XX 확인)** |
| **단체명****20XX년 XX월 XX일 개정** |

**심 의 : 단체명 단체표준심사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명** |  | **근 무 처** |  | **직위** |  |
| (위원장)  |  |  |  |  |  |  |  |
| (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 사) |  | OOO |  | 단체명 |  | OOO |  |
|  |  |  |  |  |  |  |  |

**원안작성협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명** |  | **근 무 처** |  | **직위** |
| (위원장)  |  |  |  |  |  |  |
| (위 원) |  |  |  |  |  |  |
|  |  |  |  |  |  |  |
| (간 사) |  | OOO |  | 단체명 |  | OOO |
|  |  |  |  |  |  |  |
|  |  |  |  |  |  |  |

표준열람 : e나라표준인증(http://www.standard.go.kr)

━━━━━━━━━━━━━━━━━━━━━━━━━━━━━━━━━━━━━━━

제정단체：단체명 등 록 : 한국표준협회

제 정 : 20XX년 3월 1일 개 정 : 20XX년 3월 1일

 심 의：단체명 단체표준심사위원회

원안작성협력：

━━━━━━━━━━━━━━━━━━━━━━━━━━━━━━━━━━━━━━━

이 표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e나라 표준인증 웹사이트에 등록된 표준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이 표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운영 요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매 3년마다 확인, 개정 또는 폐지됩니다.

목 차

[1 적용범위 1](#_Toc45718609)

[2 인용표준 2](#_Toc45718610)

[3 용어와 정의 3](#_Toc45718611)

[3.1 문서 종류(document type) 3](#_Toc45718612)

[3.2 표준의 종류 3](#_Toc45718613)

[4 요구사항 4](#_Toc45718614)

[5 샘플링 5](#_Toc45718615)

[6 시험방법(test methods) 5](#_Toc45718616)

[7 검사 6](#_Toc45718617)

[8 분류, 호칭 및 부호화(classification, designation and coding) 7](#_Toc45718618)

[9 표기, 라벨링 및 포장(marking, labelling and packaging) 8](#_Toc45718619)

[부속서 A (규정) 9](#_Toc45718620)

[A.1 일반원칙 9](#_Toc45718621)

[부속서 B (참고) 10](#_Toc45718622)

[A.1 일반원칙 10](#_Toc45718623)

[SPS-고유번호-일련번호:20XX 해설 12](#_Toc45718624)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  |
|  |  |  |  |
| 목차는 필수조건이다. 목차에는 “목차”라고 제목을 붙여 각 절을 기재하여야 하고, 해당하는 경우 필요할 경우 항과 그의 제목, 부속서와 괄호로 묶은 부속서의 지위(status), 참고문헌, 색인, 그림과 표를 기재한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절 및 항과 이의 제목, 부속서(필요하다면 절 및 항, 그들의 제목을 포함한다), 참고문헌, 색인, 그림, 표. 기재된 모든 사항은 전체 제목과 함께 인용되어야 한다. “용어와 정의”의 절은 목차에 기재되어서는 안 된다.목차는 자동적으로 생성시켜야 하고, 수동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 |

머 리 말

(제정시)이 표준은 00000 에서 원안을 갖추고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에 따라 단체표준 심의회의를 거쳐 한국표준협회에 등록된 표준이다.

(개정시)이 표준은 산업표준화법 관련 규정에 따라 단체표준심사위원회 및 단체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 단체표준이다. 이에 따라 SPS-A-KBIZ 0001-XXXX:20XX은 개정되어 이 표준으로 바뀌었다.

이 표준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다.

이 표준의 일부가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의를 환기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단체표준심의회는 이러한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계되는 확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  |
|  |  |  |  |
| 머리말은 각 표준마다 나타내어야 한다. 머리말에는 요구사항, 권고사항, 그림 또는 표를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머리말은 일반 부와 특별 부로 구성된다. 일반 부는 책임기관과 일반적인 표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즉,1. 해당 표준의 단체표준안을 작성한 위원회의 호칭 및 명칭
2. 표준의 승인과 연관된 정보
3. 원안작성 협력기관과 관련된 정보

특별 부는 해당 표준의 이전 판으로부터의 중요한 기술적 변동사항에 관한 서술을 제공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다음 사항을 충족시킨다.1. 표준의 작성에 기여한 원안작성 협력기관에 대한 표시
2. 해당 표준이 다른 표준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폐지 및 대체한 것과 관련된 진술
3. 해당 표준과 다른 표준의 관계(**KS A 0001 5.2.1.3** 참조)

표준 내 특허권을 명시한 부분에 해당 정보를 개요에 포함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KS A 0001**부속서** F를 참조한다. |

개 요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  |
|  |  |  |  |
| 개요는 선택 예비요소로 필요 시 해당 표준의 기술적 내용과 표준작성 개시사유에 관한 특별한 정보 및 논평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개요에는 요구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개요에는 번호가 부여된 세부구분을 생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호가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 번호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0으로 표시하며 그의 항은 **0.1**, **0.2** 등으로 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번호가 부여된 그림, 표, 표시된 공식 또는 각주라 하여도 일반적으로 1부터 시작되는 아라비아 숫자로 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

**단체표준**

**SPS-고유번호-일련번호:20XX**

(20XX 확인)

|  |
| --- |
| **단체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

|  |
| --- |
| Rules for the drafting and presentation of Standard of private sector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  |
|  |  |  |  |
| 본문은 KS A 0001 서식에 따라 작성 |

SPS-고유번호-일련번호:20XX

해 설

이 해설은 본체 및 부속서(규정)에 규정한 사항, 부속서(참고)에 기재한 사항 및 이들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니다.

# 개요

## 제정의 취지

표준을 적용할 때는 그 표준이 인용하고 있는 표준도 동시에 참조하여야 하고, ≈ 따라서 이러한 표준의 서식을 통일함으로써 표준의 이해와 적용의 효과성 향상을 위하여 표준서의 서식이 제정되었다.

## 그간의 개정 경위

1962년 제정 이후 1978년, 2007년, 2008년까지 3회의 개정을 거쳐 이번(2015년) 개정에 이르렀다.

# 1차 개정

## 범부처형 국가표준제도 운영에 따른 변경

2015년 7월 29일부로 범부처형 국가표준제도가 시행되고, ≈ 통합되고 있다.

# 2차 개정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  |
|  |  |  |  |
| 해설은 본체 **3**절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본체 및 부속서(규정)에 규정한 사항, 부속서(참고)에 기재한 사항 및 이들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니다. 해설의 내용 해설에 서술하는 내용은 다음 사항 중에서 필요한 것을 고른다.**a) 제정 또는 개정의 취지****b) 제정 또는 개정의 경위****c) 주요개정내용**1. 심의 중에 특히 문제가 된 사항
2. 특허권 등에 관한 사항
3. 적용범위
4. 규정요소의 규정항목의 내용, 특히

— 종류, 등급 등의 근거— 표준치(값)의 근거— 대응국제표준과의 비교, 국제표준으로의 이행시기 등— 법규, 외국 표준 등과의 비교— 개정 부분, 내용 및 개정 이유1. 주요개정내용
2. 그 밖의 해설사항
 |

**SPS-고유번호-일련번호:20XX**

|  |
| --- |
| **SPS****SPSP****SPSPS****SPSPSP****SPSPSPS****SPSPSPSP** |

|  |
| --- |
| **Rules for the drafting and presentation** |
| **of Standard of private sector** |
| **ICS XX.XXX** |